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	
번 호	1498

제출일자 : 2017. 12.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3726호, 시행 2016.7.7.)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(대통령령 제27971호, 시행 2017.3.30.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법령에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「조례명」 및 단순한 표현·자구의 변경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(2)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.

다. 기타사항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- (2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- (3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
- (4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5) 입법예고 : 생략(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)
- 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를 “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본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“옥외광고 정비 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한다.

제2조의 제목 “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 정비기금”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”을 “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법 제20조의2”를 “법 제10조의3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6.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

제4조제1항 중 “따로”를 “별도의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옥외광고 정비기금” 을 “옥외광고발전기금” 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옥외광고 정비기금” 을 “옥외광고 발전기금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붙여야” 를 “첨부하여야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	<u>대구광역시 달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</u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<u>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설치하고,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<u>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재원</u>) <u>옥외광고 정비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옥외광고물 등 관리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조제4항에 따른 수익금 2. · 3. (생략) 4.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5.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의 전입금 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-----</p> <p>----- <u>옥외광고발전기금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<u>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</u>) <u>옥외광고발전기금</u>-----</p> <p>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<u>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</u>」-- 2. · 3. (현행과 같음) 4. 법 제10조의3----- <p>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</p>

<p><u>6. 국가나 시의 보조금</u></p> <p>7. (생 략)</p> <p>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군 금고에 따로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<u>옥외광고 정비기금</u> 운용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위원회는 <u>옥외광고 정비기금</u>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 <p>제11조(기금결산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<u>붙여야</u>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<u>6.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</u>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별도의</u>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옥외광고발전기금</u>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위원회의 기능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기금결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및 제7조

제6조의2(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

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

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배분되는 수익금

2. 제17조에 따른 수수료

3. 제20조에 따른 과태료

4.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

5.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
6.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의 보조금

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.

1. 옥외광고산업의 진흥

2. 광고물등의 정비·개선

3.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

4.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

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

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한다.

제7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)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

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·도(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

조에서 같다) 또는 시·군·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

"라 한다)를 둔다.

1.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

2.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·도

또는 시·군·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2조 및 제33조

제32조(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 해당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(담당국장이 없는 시 · 도 및 시 · 군 · 구의 경우에는 시 · 도 조례 또는 시 · 군 · 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)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,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.

③ 위원은 본인, 배우자, 직계준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(職)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 · 도 조례 또는 시 · 군 · 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(開議)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 · 도 조례 또는 시 · 군 · 구 조례로 정한다.

제33조(심의위원회의 기능)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
2. 시 · 도 조례 또는 시 · 군 · 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